수익자총회 의사록

■ 일시 : 2018 년 6 월 26 일(화) 오전 10 시

■ 장소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31 SK 증권빌딩 10 층 칸서스자산운용㈜ 대회의실

■ 출석주식내용 :

- 총 발행좌수 : 30,906,633 좌 - 수익자총수 : 3 명
- 참석좌수 : 30,906,633 좌 (참석비율 : 100%) - 참석수익자수 : 3 명

'칸서스 법인 MMF 투자신탁 1 호(국공채)' 의 신탁계약서 제 37 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1 조 5 항에 따라 본 수익자총회 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나, 수익자 전원이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 다음과 같이 결정하다.

■ 부의 안건 :

제 1 호 의안-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에 따른 펀드명, 운용전략 및 보수 변경의 건

신탁계약서상 관련 조항	
현 행	변 경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**"칸서스 법인 MMF 투자신탁 1 호(국공채)"**로 한다. ②(생략)	**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** ①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"칸서스 법인 신종 MMF 투자신탁 1 호"로 한다. ②(현행과 동일)
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. 1. 남은 만기가 6 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.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다음 각목의 채무증권(법 제 71 조 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)(이하 "국공채" 라 한다) 및 기업어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가. ~ 바. (생략) 사. 다만, 라목 및 마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	**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**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. 1. 남은 만기가 6 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.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다음 각목의 채무증권(법 제 71 조 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) 및 기업어음증권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가. ~ 바. (생략) 사. 다만, 라목 및 마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

3.~9.(생략) ②(생략)	3.~9.(현행과동일) ②(현행과 동일)
제 18 조(신용평가등급의 제한등)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(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 매매·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.)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(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)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(이하 "상위 2 개 등급"이라 한다) 이내이어야 한다.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. ②~④(생략)	**제 18 조(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)**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(양도성예금증서 및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· 할인· 매매·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.)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(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)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(이하 "상위 2개 등급"이라 한다) 이내이어야 한다.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 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. ②~④(현행과동일)
제 39 조(보수) ①~②(생략)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0	**제 39 조(보수)** ①~②(현행과동일)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50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0
제 43 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~③(생략) ④수익자는 제 2 항에 따른 공시일부터 1 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	**제 43 조(신탁계약의 변경)** ①~③(현행과동일) ④수익자는 제 2 항에 따른 공시일부터 1 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(신설)	**부 칙(개정 2018.06.)** **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 년 06 월 일부터 시행한다**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에 의거 제 1 호의 안건에 대해 수익자에게 승인을 구한 바, 본 의안에 대하여 제출된 서면의결권 행사 접수 결과 위 안건을 가결하다.

■ 서면의결권 행사 접수 결과

- 총 발행좌수 : 30,906,633 좌
- 서면의결권행사좌수 : 30,906,633 좌
- 찬성좌수 : 30,906,633 좌 (찬성비율 : 참석좌수의 100%, 총 발행좌수의 100%)
- 반대좌수 : 없음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함.

2018 년 6 월 26 일

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 영 재 (인)